

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5호서식] <신설 2023. 12. 29.>
[시행일: 2025. 1. 1.] 통합관리사업자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

통합환경관리인 [] **선임**
[] **해임** **신고서**
[] **퇴직**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10일
신고인	상호(명 칭)			
	성명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		
	주소(사업장) (전화번호:)			
사업장 개요	통합환경관리인 ()명	통합환경총괄관리자: ()명		
		통합환경일반관리자: ()명		
	사업장 구분 대기 () 종, 수질 () 종	종업원 수 ()명		
선임·해임· 퇴직자	구분 [] 통합환경총괄관리자 [] 통합환경일반관리자			
	성명	생년월일		
	주소	자격 번호		
	선임·해임·퇴직 연월일	년 월 일	직위	

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의 []선임 []해임 []퇴직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고인

환경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사본 2.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서·해임서·퇴직서 3.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이수확인증(선임하려는 통합환경관리인이 법 제2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, 경력증명서 등 별표 14의2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5.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인의 명단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